

# 과업내용서

## I

### 과업 개요

1. 과업명 : 한국의 사례로 본 원주민의 커먼즈 운동 경험과 그 세계적 보편성 연구

2. 과업기간 : 계약일~2020.10.31까지

### 3. 과업목적

- 오는 10월 21~23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제 5차 국제사회적경제포럼(Global Social Economy Forum, GSEF2020)에 맞추어, 본 포럼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'커먼즈 운동'의 토착 사례를 발굴하여 국제적 논의의 장에 발표하고자 함.
- 특히 중남미 사회적 경제에 있어 주요한 주제인 지역 자산의 공동관리 등과 함께 논의될 수 있는 국제 토착 사례의 발굴이 필요하므로, 한국내 자생적 커먼즈 운동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GSEF2020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통한 원주민들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전략을 고민하고자 함.
- 한국에서 토착적 내생적으로 발전해 온 자립적 공동체 지향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조사
- 한국의 사례들을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 받으며 활발히 토론되고 있는 커먼즈 Commons 담론 틀 속에서 개념화
- 세계적으로 커먼즈 논의의 장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커먼즈 운동의 보편성을 확인
- 탈-신자유주의 대안 경제를 추구해 온 사회적 경제와 커먼즈 운동의 지향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, 이론적 실천적으로 보다 긴밀한 연계 속에 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색

### 4. 과업의 필요성

- 세계적인 차원에서 커먼즈 운동의 부상
  - 플랫폼 경제 혹은 "공유 경제"의 대두와 궤를 같이하여, 시장 자본주의의 한

계와 국가 및 공공부문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경제 형태인 커먼즈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

- 전통적 커먼즈 형태의 발굴 및 재평가 작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커먼즈 실험 운동이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음
- 이에 사회적 경제 운동이 추구해 온 이론적 지향과 실천적 경험을 커먼즈 운동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대안적 경제 운동의 확장을 모색할 필요가 생김

○ 한국의 공동체 경제 운동 전통과 새로운 유형의 커먼즈 운동의 발전

- 우리나라에도 커먼즈 개념에 부합하는 경제 형태를 이루고 발전시켜 온 여러 유형의 풀뿌리 공동체 경제 운동이 존재해 있음
- 자연 자원의 공유에 기반한 전통적 형태의 커먼즈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 환경과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발전시켜온 커먼즈들도 존재
- 이에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커먼즈 운동의 이론과 개념들 속에서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 경제 운동의 형태와 더불어 최근의 형태들을 재해석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생김

○ 국제 운동과의 쌍방향 소통과 운동 발전에 기여 필요

- 세계적 차원에서의 커먼즈 운동 흐름에 동참이 요구되고 있음
- 반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운동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공유하여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운동의 확산을 도모가 바람직
-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, 가령 세계적인 커먼즈 운동 단체와 함께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국내 사례를 커먼즈의 이론적 개념적 시각으로 정립하고 이를 영문으로 정리하여 국제회의에서 공유할 수 있음

## II

## 과업내용서

본 과업에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을 ‘발주기관’이라 하고, 계약자를 ‘계약상대자’라 한다.

### 1. 과업의 내용

#### ○ 연구 조사

- 커먼즈 개념의 정리와 해외 커먼즈 사례의 조사
- 한국에서 토착적 내생적으로 발전해 온 자립적 공동체 지향의 사회적 경제 운동 사례 조사
- 한국의 사례들을 커먼즈 개념 틀 속에서 재해석
- 사회적 경제와 커먼즈를 역사와 보편성을 지닌 하나의 세계적 운동으로 평가 시도

### ○ 영문 보고서 작성 및 GSEF 발표

- 연구 결과는 국문 및 영문 보고서로 작성 국제적으로 공유
- GSEF 2020에 참가해 한국의 사례를 발표

## 2. 과업의 범위

### ○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물 작성
- 용역수행에 필요한 조사
- 성과물 제작 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
- 용역 수행과정 중 협의 등의 대행
- 성과물의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
- 성과물에 대한 보완
- 멕시코 포럼(10/20~23)에서의 성과물 발표(영어 프리젠테이션)

## 3. 과업수행기간

-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,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 -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
  - 발주기관의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됐을 때
  -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

-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

#### 4. 업무보고 및 협의
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, 과업 완료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- 과업수행 내용
  -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처리결과
  -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
- 다음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.
  -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, 성과품 작성 시, 준공 시

#### 5. 성과품

##### ○ 성과품 내용

구 분	성과품 내용	수량	단위	비 고
최종 성과품	최종보고서(영문)	2	부	
	최종보고서(국문)	2	부	
	USB	2	개	최종보고서 파일 및 조사 분석 결과 파일 포함

##### ○ 성과품 작성지침

-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제작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모든 성과품은 국문 및 영문을 사용하되,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.
-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,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,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,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

하여 증감할 수 있다.

### Ⅲ

## 과업수행 지침

### ○ 과업수행 일반지침

-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착수서류에는 과업수행계획서, 책임자의 선임계, 과업참여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, 참여인력 투입계획, 보안각서,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,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과업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선정하고 분야별 우수한 전문연구진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.
-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
-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,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,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.
-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, 추가,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 한다.
-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이 발생한 경우,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 ○ 계약의 해지

-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
-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계약상대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 할 수 없을 때
-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## ○ 과업의 중지 및 변경

-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.

## ○ 용역의 책임

-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시 또는 용역 완료 후 예산손실 등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
## ○ 추가 작업 등

-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○ 보안대책

-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사항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,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

여야 한다.

-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-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
## ○ 하도급

-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.
-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내용, 하도급자 선정 고려 사항, 하도급의 범위,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,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의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## ○ 기타사항

-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,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